장수군
JANGSU COUNTY

군 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404호 2018. 8. 16 (목)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8 – 718호「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장수군 공고 제 2018 – 722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장수군 공고 제 2018 – 723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장수군 공고 제 2018 – 73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1
장수군 공고 제 2018 – 737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2
장수군 공고 제 2018 – 738호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9
장수군 공고 제 2018 – 744호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5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18 – 72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 80
장수군 공고 제 2018 – 76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86

공 고

장수군 공고 제 2018 – 724호 도로지정 공고 …… 87
장수군 공고 제 2018 – 739호 양삼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88
장수군 공고 제 2018 – 740호 양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 92

회람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228)

장수군공고 제 2018 - 71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이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증원하고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선수단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수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을 증원함(안 제3조)
나.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 규정(안 제4조)

3. 관련법규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4. 금후계획

가.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조례안 입법예고 : 2018. 8월

나. 조례안 종합검토(입법예고 의견제출사항 등 반영) : 2018. 8월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8월

라. 조례안 군의회 상정 및 심의 : 2018. 9월

마. 조례 공포 및 시행 : 2018. 9월

5. 의견제출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638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체육팀)
(전화 063-350-5551, 팩스 063-350-259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담당자 우성기 (전화 : 063-350 - 55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6명”을 “7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수단구성)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한다.	제3조(선수단구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원의 수는 감독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	2. ---------- 7명 ----------.
제4조(임용) ①、② (생 략)	제4조(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후단 신설〉	③ ----------. 다만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 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장수군 공고 제 2018 - 722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장 수 군 수

1. 제안이유

가. 청정하고 활력 있는 장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수군의 기능중심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나. 신(新)행정수요와 시대적 경향에 호응하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본청 실ㆍ과(2실9과)체제의 기능보강과 확대(2실 11과), 사업소의 명칭 및 기능 변경 등을 통해 국가 정책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기구로 개편하고자 함

1) 청년실업, 일자리, 인구감소 등 장수군이 직면한 일자리, 경제 등의 현안 문제를 전담할 기구(일자리경제과)를 본청에 신설 함(안 제3조 및 안 제5조의2)

2) 기존 사업소에서 수행하던 문화、체육、관광 등의 정책 보조업무를 본청 보조기관(문화체육관광과)에 이관 함(안 제3조 및 안 제7조의2)

3) 기존 산림녹지과의 부서명칭을 산림과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산림소득 및 보호 등의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9조의2)

4) 문화체육관광업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사업소의 명칭을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한편, 한누리전당, 대곡관광지, 공원, 상、하수도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기능을 변경 함(안 제19조 및 안 제21조)

나. 2017년 2월 개설 운영 중인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의료원 소속기구로 명문화 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 까지, 안 별표1)

다. 그 밖에 부서명칭의 변경 및 주요 사무의 조정

1) 기존 행정지원과의 규제개혁사무와 인구정책 업무를 각각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이관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2)

2) 기존 건설경제과의 지역경제업무와 마을공동체 업무를 일자리 경제과로 이관하여, 인구 · 경제 · 일자리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안 제5조의2)

3) 기존 안전재난과의 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 업무를 민원과에 이관 함(안 제7조)

4) 기존 농업정책과의 소관 업무인 한우랑사과랑 축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과에 이관 함(안 제7조의2)

5) 산림녹지과의 명칭을 산림과로 변경하고, 공원녹지팀의 공원관리 업무 등을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로 이관 함.(안 제9조의2 및 안 제21조)

6)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업무를 안전재난과의 소관사무로 추가 함(안 제10조)

7) 교통행정 및 운수행정 업무를 기존 민원과에서 건설경제과로 이관하고, 건설경제과의 명칭을 건설교통과로 변경 함(안 제12조)

8) 기존 환경위생과의 상 · 하수도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 함(안 제21조 제1호)

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인「지역보건법」조문의 불일치 조항 정정(안 제13조 및 안 제15조)

3. 금후 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제출 등 : 2018. 8월중

다. 전라북도 조례안 검토, 공포 · 시행 : 2018. 9월 중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291, FAX : 063-350-24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명선 (전화 : 063-350-229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로,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소송”을 “소송, 규제개혁 사무 총괄”로 한다.

제5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조정
2. 공공근로,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 사업
3.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 총괄
4.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발굴
5.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및 지방물가 관리
6. 전통시장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농공단지 관리
7. 농촌중심지 활성화ㆍ마을만들기 사업
8. 귀농귀촌, 과소화 마을 관리, 도농교류 업무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 급여, 취약계층 생활민원 업무 처리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종교관련 업무

2. 문화재 관리, 발굴 및 복원
3. 체육진흥 계획 수립ㆍ지원사업
4.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관광진흥 계획 수립ㆍ추진
6. 장수군 대표축제 계획 수립 및 추진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2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종전의 제10조) 제목 “(산림녹지과)” 를 “(산림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녹지과장” 을 “산림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원녹화 사업, 공원ㆍ산림휴양” 을 “산림휴양” 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목 “(건설경제과)” 를 “(건설교통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경제과장” 을 “건설교통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통행정 및 운수행정업무 추진

제10조(종전의 제1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제13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를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제11조 등에 따라” 로, “한다” 를 “한다)를, 장계면에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건강생활지원센터”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소” 를 “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로 한다.

제14조 중 “의료원ㆍ지소” 를 “의료원ㆍ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로, “원장ㆍ지소장” 을 “원장ㆍ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으로, “의료원ㆍ지소” 를 “의료원ㆍ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 및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제2항 중“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사업소”를 각각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제2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21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누리전당ㆍ다목적체육관ㆍ공원ㆍ대곡관광지, 논개생가지 및 논개사당 등의 관리

나. 하수도 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업무

다. 상수도 현대화사업, 저수조 및 상수도 시설 관리

제21조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8년 9월2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②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산림녹지과장”을“산림과장”으로 하고,“건설경제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장수군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⑦ 장수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 “건설경제과장”을 각각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 과장”을 한다.

⑧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경제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

[별표 1]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제3항 관련)

1. 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산서 보건지소	산서면 비행로39-3	산서면 일원
번암 보건지소	번암면 지지로 62	번암면 일원
천천 보건지소	천천면 송탄로 4	천천면 일원
계남 보건지소	계남면 장안산로 11	계남면 일원
계북 보건지소	계북면 장무로962-4	계북면 일원

2. 건강생활지원센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장계면건강생활 지원센터	장계면 한들로 124	장계면 일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 략) 9. 군 행정 감사, 공직자 직무ㆍ비위 감찰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 법제 및 소송	제4조(기획조정실) ----------. 1. ~ 8. (현행과 같음) 9. ---------- 소송, 규제개혁 사무 총괄
제5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 략) 9. 규제개혁사무 총괄 〈신 설〉	제5조(행정지원과)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의2(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조정 2. 공공근로,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 사업

	3.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 총괄 4.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발굴 5.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및 지방물가 관리 6. 전통시장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농공단지 관리 7. 농촌중심지 활성화ㆍ마을만들기 사업 8. 귀농귀촌, 과소화 마을 관리, 도농교류 업무
제7조(민원과) 민원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교통행정 및 운수행정업무 추진 〈신 설〉	제7조(민원과) ----------. 1. ~ 4. (현행과 같음) 5. 주거 급여, 취약계층 생활민원 업무 처리 제7조의2(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종교관련 업무 2. 문화재 관리, 발굴 및 복원 3. 체육진흥 계획 수립ㆍ지원사업 4.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관광진흥 계획 수립ㆍ추진 6. 장수군 대표축제 계획 수립 및

	추진
제8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환경위생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먹는 물 및 하수도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	〈삭 제〉
3. 광역상수도 및 상수도 시설 업무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농업정책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획 및 총괄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생 략)	제9조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10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의2(산림과) 산림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원녹화 사업, 공원ㆍ산림휴양 및 가족휴가촌 등 시설관리	4. 산림휴양 ----------
5. 삭 제	
제11조(건설경제과) 건설경제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	제12조(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교통행정 및 운수행정업무 추진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지역경제활성화, 노동행정	〈삭 제〉
제12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안전재난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생활민원 처리	6.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제13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군에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설치) ①----------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제11조 등에 따라 ---------- 한다)를, 장계면에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원	③ ----------

은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에 두고,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원장 등) 의료원ㆍ지소 및 진료소에 각각 원장ㆍ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의료원ㆍ지소 및 진료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원장 등) 의료원ㆍ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 원장ㆍ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의료원ㆍ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
제15조(업무) ① 원장 및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업무) ① 원장 및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동 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와 환경자원 사업소를 둔다.	제19조(설치) ① ---------- 시설관리사업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② ----------

된 문화체육관광사업소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에 두며, 환경자원사업소는 장수군 장계면 금곡로 335-7에 둔다.	------ 시설관리사업소----------.
제21조(업무) 각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21조(업무) ----------.
1.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1. 시설관리사업소장
가.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종교관련 업무	가. 한누리전당ㆍ다목적체육관ㆍ공원ㆍ대곡관광지, 논개생가지 및 논개사당 등의 관리
나. 관광진흥계획 수립ㆍ추진	나. 하수도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다. 문화체육관 및 문화시설 운영	다. 상수도 현대화사업, 저수조 및 상수도 시설 관리
라. 체육진흥계획 수립ㆍ지원사업	〈삭 제〉
마.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장수군 공고 제 2018 - 723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2018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493명에서 515명으로 22명 증원 조정

가) 집행기관의 정원 : 479명 ⇨ 501명(증22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 계 : 493 ⇒ 515(증22)

2) 일반직 계 : 460 ⇒ 482(6급이하 정원을 434에서 456명으로 증원)

3. 금후 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제출 등 : 2018. 8월중

다. 전라북도 조례안 검토, 공포 · 시행 : 2018. 9월 중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291, FAX : 063-350-24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명선 (전화 : 063-350-229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93인” 을 “51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9인” 을 “501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15					
정무직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482					
4급	2	1		1		
4급 ~5급	2	2				
5급	24	11	2	2	2	7
6급 이하 계	453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사	5					
지도직 계	26					
지도관	3			3		
지도사	2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3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51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479인	1. ---------- 50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493					
정무직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460					
4급	2	1		1		
4급 ~5급	2	2				
5급	21	9	2	2	1	7
6급 이하 계	434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사	5					
지도직 계	26					
지도관	3			3		
지도사	23					

【별표 3】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15					
정무직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482					
4급	2	1		1		
4급 ~5급	2	2				
5급	24	11	2	2	2	7
6급 이하 계	453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사	5					
지도직 계	26					
지도관	3			3		
지도사	23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 ·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 · 도의 5급 이하(시 · 군 · 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정원증원 : 5급 3명, 6급 3명, 7급 4명, 8급 6명, 9급 6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기준 5급30호봉, 6급12호봉, 7급8호봉, 8급 5호봉, 9급 3호봉 으로 전제
- 1~5차년도 비용추계는 2018년 기준 인건비 연도별 임금인상율 3.5%적용

(단위: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지출							
	소계	970,372	983,758	1,018,190	1,053,826	1,090,710	5,116,857
수입							
	소계						
총비용		970,372	983,758	1,018,190	1,053,826	1,090,710	5,116,857

3.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의존재원	소계	970,372	983,758	1,018,190	1,053,826	1,090,710	5,116,857
자체수입	소계						
기 타							
합 계		970,372	983,758	1,018,190	1,053,826	1,090,710	5,116,857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 김명선(063-350-229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2018년도 기준 비용추계액 : 970,372천원

구 분	조정(명)	소요비용	산출내역	비고 (기준)
정원	소계	970,372천원		
	5급(+3)	238,848천원	○ 79,616천원 × 3명 = 238,848천원	5급 30호봉
	6급(+3)	169,375천원	○ 56,458천원 × 3명 = 169,375천원	6급 12호봉
	7급(+4)	179,684천원	○ 44,920천원 × 4명 = 179,684천원	7급8호봉
	8급(+6)	210,299천원	○ 35,049천원 × 6명 = 210,299천원	8급 5호봉
	9급(+6)	172,166천원	○ 28,694천원 × 6명 = 172,166천원	9급 3호봉

2. 상기 금액은 정원 상 증가 추계임

- 2018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작성함

※2018년도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억원)

기준인건비 총액 (A)	인건비 편성액 (B)	기준인건비총액(A) - 편성액(B))	비고
486	451	35	

장수군 공고 제 2018 - 73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장 수 군 수

1. 제안이유

민선 7기를 맞이하여 빈틈없는 인력운용과 현행 조직을 시대 흐름에 맞춰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유연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에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체육관광과를 각각 신설 또는 이관함으로써 일자리、경제、인구, 문화관광 등의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각각 보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보건지소장의 자격에 관한 근거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정(안 제7조)

다.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연구과의 명칭을 과수과로 변경하고 과수유통의 기능 강화(안 제10조 및 별표3)

라. 기존 문화체육관광사업소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책업무를 본청에 이관(문화체육관광과) 함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한누리전당 및 공원, 대곡관광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기능을 조정 함(안 제12조 및 별표4)

마. 환경자원사업소의 지속적 업무증가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기존 주사(환경、농업、공업직)에서 5급 사무관으로 상향하고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나누어 맡는 사무를 조정(안 별표1, 안 별표3, 안 별표4)

1) 기획조정실의 나누어 맡는 사무에 규제개혁(기존 행정지원과 규제개혁팀 업무), 납세자보호 업무(신설) 추가

2) 주민복지실의 공공근로사업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 이관

3) 행정지원과의 규제개혁업무와 인구정책팀 업무를 각각 기획조정실과 일자리경제과에 이관하고, 정무업무 대응과 직소민원 등의 업무(미래비전팀)를 추가

4) 본청에 일자리 경제과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재배분 함

가) 기존 건설경제과(현 건설교통과)의 지역경제업무 전체를 일자리창출팀과 지역경제팀 업무로 분리하여 일자리경제과에 이관, 마을공동체 업무도 일자리경제과에 이관

나) 기존 행정지원과의 인구정책팀을 일자리경제과에 이관

다) 농업정책과의 귀농귀촌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 이관

5) 기존 민원과의 교통팀 업무를 건설교통과로 이관

6) 농업정책과의 축제업무(한우랑사과랑축제)를 문화체육관광과에 이관

7) 축산과의 업무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명시

8) 산림과의 공원관리 업무를 신설되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

9) 기존 안전재난과의 생활민원 업무(cctv 관리 업무 제외)를 민원과에 이관

10) 환경위생과의 하수도 · 상수도팀을 신설되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

11) 기존 건설경제과의 지역경제, 마을공동체팀을 일자리경제과로 이관 함.

3. 금후계획

가 . 입법예고 : 2018. 8. 9 ~ 8. 28(20일 간)까지 실시 예정

나. 전라북도 규칙안 검토, 공포 · 시행 : 2018. 9월 중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291, FAX : 063-350-24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명선 (전화 : 063-350-229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규칙 제 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12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⑦문화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산림녹지과장” 을 “산림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건설경제과장” 을 “건설교통과장” 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 을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수특작연구과장” 을 “과수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지원과장” 을 “농촌지원과장과 과수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지방환경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공업주사” 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일반직ㆍ농촌지도직공무원” 을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 실과 란의 “과수특작연구과” 를 과수과로 하고, 나누어맡는 사무란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과수산업 홍보 · 마케팅 및 유통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2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② 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로 한다.

③ 장수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본청 실·과별 나누어 맡는 사무표(제4조 관련)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기 획 조정실	1.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군정종합 평가.분석 2. 군정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 계획수립, 조정.통제 3. 각종 지시사항.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처리 4. 군 및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 5. 군정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상황실 운영 6.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추진 7. 대외협력(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관리 및 가족화 사업 추진 8. 국가균형발전 및 특구업무 9. 지역.행정 혁신 10. 공무원 국외여행 11. 성과관리 시스템 기반구축 12.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시책사업 발굴 13. 군정의 전략 및 미래 인프라구축 관련 사업 추진 14. 군정홍보 기획 및 홍보자료 작성 15. 각종 홍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16. 군정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배부 17. 군정홍보(야립광고판) 18. 영상 및 보도기획 업무 19.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예산편성 및 관리, 지방채.기채에 관한사항 2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22. 예산투자사업 효과분석 23.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24. 각종 정책개발 25. 건강도시 업무 총괄 26. 사회단체 총괄 관리 27. 향우회 업무 28. 공직자 비위조사, 공직기강확립 29. 상급기관 이첩민원, 징계의결요구 30.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3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납세자보호 32.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33. 소송.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4.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3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36. 제4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37.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38.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39.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40.「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운영 조례(헌장) 제정 운영 41.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42.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43. 출자 출연기관 업무 총괄 44. 지역행복생활권 업무 총괄
주 민 복지실	1. 지역사회협의체 관리 및 운영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3. 사회복지 계획수립 4. 사회복지시설 관리 5. 사회봉사활동 집행 6. 주민생활지원 업무 7. 자원봉사 활동지원 8. 보훈업무(백용성생가지 관리) 9.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조정 10. 자활사업관리업무 1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2.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및 관리 13.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14. 이재민 구호대책, 행려병자 및 사망자 처리 15. 이웃돕기 16. 장애인 업무 17.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18.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대상자 신규조사(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 19.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20.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21. 긴급복지지원 22. 의료급여 수급자 조사 23. 상담실 운영(각종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 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관련부서로 연계 등) 24. 여성.보육정책 및 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25. 여성정책개발, 여성권익보호, 여성단체관리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26. 가정.성폭력 예방사업 추진 27.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및 지도감독 2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리 29. 청소년 정책 및 보호육성에 관한사항 30. 청소년단체 및 시설관리에 관한사항 31.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보호 32. 저출산 관련 업무 33. 모.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 34. 노인복지계획 수립.시행 35.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36.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장사업무전반 37. 각종 노인복지사업 지원 38.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대상자 확정 및 지원 39. 고령화 관련 업무 40. 복지일자리
행 정 지원과	1.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2.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 조직관리 3. 정.현원 관리등 인력관리 4. 조직진단 및 인사기록관리에 관한사항 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6. 선거, 국민투표, 읍면 리하부조직 관리 7. 시장.군수 협의회, 기관단체장 상조회 8.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직원 인력동원 9.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10. 지방분권 업무 11. 신규업무 및 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조정역할 12. 본청 공무원, 청경 복무관리 단속 및 당직관리 13. 상훈, 보안, 복무단속 14. 문서이관 및 기록물 관리, 제안제도 15. 적십자 회비, 직원후생복지 전반 16. 공인관리 및 문서수발 17. 행정서비스 헌장 18.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19. 과거사 진상조사 20. 국가기반체계 업무 21. 공무원 교육훈련 22. 공무원 직장교육 및 군민 교양교육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23. 평생학습 교육체계 구축 및 지원 2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추진 25.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 26.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정보화 시스템 도입 27.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28. 전자문서유통 및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9. 대표홈페이지 및 동영상 시스템 운영 30.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31. 새올행정시스템 및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운영 32. 컴퓨터보급 및 업무용 S/W 보급 관리 33.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34.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관리 35. 부서별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및 지원 36. 정보화 교육장 및 영상회의실 운영 37. 전산 및 통신 일반사항 38.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39. 전용회선(데이터 및 행정전화) 운영관리 40. 행정종합정보통신망 및 IP관리 41. 행정전화 및 정보통신회선 운영 관리 4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설계검토 43. 교환 및 팩스시설 운영 관리 44. 정무관련 대응, 직소민원
일자리 경제과	1. 지역일자리 총괄 2 일자리 종합대책수립 및 일자리사업 발굴 3. 지역일자리 공시제 4. ·일자리위원회(협의체) 구성 및 관리 5.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 공공근로 10. 마을기업 육성(고도화)사업 1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12.·협동조합 13.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14. 워크넷 관리 및 직업소개소 업무 15.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총괄, 인구늘리기 업무 총괄 추진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16.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 발굴 17. 인구정책 위원회·실무추진단 운영 18. 전통시장 관리 19. 소상공인 지원 20. 물가관리, 소비자고발센터, 착한가격업소 21.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22. 새마을금고 업무, 대부업 23. 특수거래업무(방문,통신판매업,복권판매) 24. 담배소매인 25. 농공단지 분양 26. 농공단지 관리 및 정비사업 27.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등록·변경 28. 기업유치(투자유치) 29. 중소기업육성기금 30.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31. 중소기업 지원업무(기업하기 좋은 지역만들기) 3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33.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34.·노동조합, 광업업무 35.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36. 맑은물 푸른농촌 사업 추진 37. 마을만들기사업(권역단위,마을단위) 3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9. 도시재생 업무 추진 4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41. 생생마을사업 추진 42. 장수마을 조성사업 추진 43. 중간지원조직 관리 44. 귀농귀촌, 도농교류, 과소화 마을 관리 45. 귀농귀촌인 대상 융자사업 46. 도시민 유치지원·활성화(박람회,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 47.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48. 귀농인의 집(리모델링 및 임대) 지원 및 임대사업, 공모사업
재무과	1. 지방세정 시책 수립 2.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 발굴 5. 자금배정 6. 군금고 선정, 관리 7. 일반회계 군세입금 수납처리 및 세입결산 8. 국.도비 보조금 관리 9.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괄추진 및 채권 총괄관리 10.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예산결산 1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및 국도비재배정 지출 12. 재무회계 운영 및 재무결산 13.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리에 관한사항 14. 공무원.무기계약직 급여관리, 의료보험, 연금 및 공제 업무 15. 복지회관 관리 16. 국.공유 재산 총괄 관리 17. 청사.관사.차량 유지관리 18. 물품관리 19. 순환버스 운전원 통합관리(노인복지관, 의료원, 문화체육관광사업소, 터미널 이용 군민통합 수송)
민원과	1. 호적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총괄 2. G4C 운영관리 3. 민원1회방문, 전국FAX민원 4. 여권 및 민원관련 제증명 업무 5.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업무 6. 지적공부 관리 7. 지적제증명 발급, 지적 측량검사에 관한업무 8. 공유토지 분할 업무, 지적측량 9.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10. PBLIS 운영 11.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명법 12.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 13. 개별공시지가에 관한업무 14. 토지관리 정보체계 운영 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검인업무 1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1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8. 직속기관 신축건축물 감독업무 19. 건축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20.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지도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21. 건축보조사업(마을회관, 마을모정, 경로당 개.보수) 추진 22. 건물표시변경등기 촉탁,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23. 생활민원, 농어촌 임대아파트 건립, 주거급여 지원
문화 체육 관광과	1. 문화예술 관련 기획 및 축제일반 2. 전통사찰, 매장문화재등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사항 3. 문화재 관리 및 지정 4. 향토사 연구 및 유적지 관리 5. 종교단체, 예술촌 관리 6. 각종 체육행사 기획, 생활체육교실 운영 7. 골프장 건설 8.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9. 스포츠레저 업무 10. 문화시설(문화체육관, 각종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11.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 12. 관광관련 기획 및 관광개발 사업 추진 13. 장수관광 업무, 전북투어패스 14. 가야문화유적 업무 15. 국가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16. 대표축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7. 관내 소규모 축제 추진 및 지원
농 업 정책과	1. 농업 정책 추진 총괄 관리 2. 농촌사업(소득금고, 경영회생) 지원 및 관리 3. 농지의 이용 및 관리 업무 4.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업무 5. 농업인 안전 보험 및 농작물 재해 보험 업무 6.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 7.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농업기술센터 업무 제외) 8. 농업 6차 산업화, 9. 향토산업·농촌체험 마을 조성 및 관리 10.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11.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 12. 농촌 테마공원 운영 관리 13. 귀농 업무 14. 도·농교류 업무 15. 농촌관광 농원 · 민박 지정 관리 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대책

실 · 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17. 양정 업무, 학교급식 관련 업무 18. 비료 및 농약 관리 19. 농업관련 직불제 사업 20. 농업재해 대책 (과수제외) 21. 일반 원예시설 지원 22. 지역특화 사업 지원 23.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24. 전작, 특작지원 사업 25. 농업의 FTA 사업 총괄 26. 농·특산물 유통지원 총괄 27. 거점 산지 유통센터 지원 28.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29. 농·특산물 국내·외 판매 촉진 지원 30.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및 홍보 31.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 32.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33.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추진 및 지원
축산과	1.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시범단지 조성 2. 한우생산이력제, 한우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 3. 지역특화 및 신활력사업 4. 젖소능력개량,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5. 가축통계, 축수산 재해 6. 가축방역, 축수산물 유통 지도점검 7.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8. 퇴비사 및 장비구입지원 9. 내수면 관리, 불법어업 단속 10. 장수한우 유전자 허브사업 추진 11. 장수한우 당대검정, 후대검정, 초음파진단,수정란 이식등 사업 추진 12. 장수한우의 데이터 구축 및 명품화 추진 13. 축사분뇨처리 시설 및 액비 14. 말 산업 육성계획 수립.지원(말 산업 클러스터 사업 전반) 15. 축산과 소관 서무, 재산관리, 차량관리 및 업무총괄 16. 곤충산업(양·한봉 등 포함) 육성 및 지원
산림과	1. 경제림단지 육성 및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 2. 조림사업계획 및 실행지도 (특수시책 조림, 종묘사업 추진) 3.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4.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인, 임업·사회단체 등 육성지도 5. 산림경영계획 운영관리 6. 임목벌채허가 및 목재수급 관리 7. 봉화산 관리 8. 산림소득사업 9. 군유림 관리 10.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11.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12. 산림작물 재해조사 13. 관상수시업상황조사 및 산림·임산물통계 14.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5.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6. 임업기술지도 17.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산림지리정보(FGIS) 구축·관리 18.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업무 추진 19. 토석채취, 광산허가 및 관리 20.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1.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및 임업기계장비관리 22. 산림피해예방 단속 및 사법처리 23. 임도사업 추진 및 관리 24. 산사태 위험지, 산림재해 및 사방지 관리 25. 숲가꾸기사업 26. 산림병해충방제 27.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28. 임산물 굴취·채취허가 및 사업지도 29. 등산로 (숲길) 조성 및 관리 30. 자연휴양림(와룡, 방화동) 보완사업 및 운영.관리 31.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 및 운영.관리 32.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33.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등 조성 및 관리 34. 가로수, 도시숲, 생태숲, 마을숲, 학교숲, 우량소나무 테마숲, 녹색나눔숲 조성 및 관리 35.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추진(산촌운영매니저, 숲해설가, 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
안 전 재난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 2. 민방위 계획수립 및 민방위대 편성운영 3. 민방위 교육.훈련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4. 민방위 시설보호 및 장비유지관리 5. 민방공 싸이렌 장비 운영 관리 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7. 주민신고망 관리 8.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9. 비상대비업무 10. 지역자율 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11. 인명피해최소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12. 국가재난대응훈련 실시 13. 자연재난 대비 교육(방재교육) 14. 민간 모니터위원관리 운영 15. 응급 복구용 장비 지원 협약 16. 소방업무 17. 의용소방대 지원 18.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작성.관리 19.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20.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1.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22.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보수.정비 23. 재해피해상황 보고, 분석 및 복구계획 수립 24. 수해복구사업, 수방자재 비축관리 25. 재난 예, 경보 시설 관리 26.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대비 응급대응체제 구축 27. 재난대비 물자장비 관리 동원계획 수립 28. 자연재해경감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29.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추진 30. 지진피해 경감대책수립.추진 31. 소하천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32.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수립.추진 33. 에너지 관리, 석유가스 판매업소 사용시설 관리 34.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관리자문단운영 35. 안전점검의날 및 안전문화운동 운영 36.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3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추진 38.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 및 지원체제 구축 39.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조사점검 40.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지방2급하천 공사 지도감독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41. 지방2급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골재채취허가 42. 지방 2급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기성제 정비 43. 관제요원 채용 및 관리 감독 44. 주민생활안전, 자위방범 CCTV 관리 4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6.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조례 및 규정 총괄 47.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8. 장수군 CCTV 총괄 관리 49. 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50. 영상정보 제공 및 열람 관련 민원처리
환 경 위생과	1.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2. 자연환경보전업무(생태마을, 야생동식물보호)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및 관리 5.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6. 토양오염, 유독물관리 및 오염유발시설 관리 7. 오염총량제 업무 8.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및 단속 9.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단속 10.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신고 및 관리 11.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단속 12. 쓰레기 종량제 추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1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및 인허가 14.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19. 사업장(건설, 감염성폐기물) 신고 및 지도단속 20.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단속 21. 식품제조 가공업소 허가.단속 22.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23. 향토음식.모범업소 지정관리 24. 위반업소 행정처분(공중,제조,즉석제조) 29.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총괄 30. 생태복원 업무 31. 예향천리 마실길 32. 야생조수보호 및 순환수렵장 운영
건설 교통과	1. 국.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2. 옥외광고물 관리 및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3. 도로정비 및 도로굴착업무 전반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4. 국유재산 관리 5. 지방도 보상추진 및 민원관리 6.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업무 전반, 도시재생 7. 관광순환도로개설사업 추진 8. 개발촉진지구등 지역개발 업무전반 9.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10. 개발행위허가.협의 11.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12. 도로망 건설 종합계획 13.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개보수 사업 14.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공사 협의 1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16. 자동차 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업무 17.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지도관리 18. 자동차 관리사업 인허가 및 지도관리 19.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자동차 의무보험관리 20. 주차장 및 주정차 지도 21.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22.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지도감독 23. 소규모 지역개발 업무관리 전반 24. 소규모사업 자체 측량 및 설계 25.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26. 밭기반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27. 오지개발사업 계획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28. 수리시설, 지하수 개발사업 29. 한해대책 및 양수장비 관리 30. 농촌가로등 설치, 관리

[별표 4]

사업소에서 나누어 맡는 사무표(제13조 관련)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시설관리 사업소	1.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논개사당 관리 2. 공원 운영 관리(장안산 군립공원, 물빛공원, 노하숲, 방촌공원, 백화정, 의암공원, 수분령 사과공원, 육십령, 소공원) 3. 대곡관광지, 도깨비박물관 4.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5.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 6. 배수지 및 저수조 관리 7.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8. 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 설치 및 운영 9. 하수관거정비 및 관리(배수설비신고) 10.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11.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환경 자원 사업소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2.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및 생산.판매 3.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 4.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5.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판매 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7.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장의 직급) ① ~ ③ (생 략)	제3조(실、과장의 직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⑫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⑦문화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⑧ (생 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⑩ 산림과장--.
⑩ 건설경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⑬ 건설교통과장--.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7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보건지소장의	제7조(보건지소장) ----------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장, 과수특작연구과장을 둔다.	제10조(하부조직) ① ---------- 과수과장----------.
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촌지원과장과 과수과장----------.
③ 과수특작연구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삭 제〉
제12조(소장의 직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지방환경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공업주사로 보한다.	제12조(소장의 직급) 시설관리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으--.
제14조(읍·면장의 직급) ①「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읍·면별로 읍·면장을 두고, 각 읍·면장은 5급 일반직·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읍·면장의 직급) ①---------- 일반직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장수군 공고 제 2018 - 737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장 수 군 수

1. 제안이유

2018년 조직개편 및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493명에서 515명으로 증원하고 기구별 인력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 및 별표1)

1) 집행기관의 정원 : 기존479명⇨ 501명(증 2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변동사항 없음)

3) 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총계	본청	의회	보건 의료원	농업기술 센터	사업소	읍·면
현행	493	248	14	65	31	32	103
변경	515	270	14	67	32	29	103
증감	+22	+22	-	+2	+1	-3	-

4) 직급별 조정내역(일반직)

계 급		총계	본청	의회	보건 의료원	농업기술 센터	사업소	읍·면
소계	당초	460	245	14	65	2	31	103
	변경	**482**	**267**	14	**67**	**3**	**28**	103
4급		2	1		1			
4-5급		2	2					
5급	당초	21	9	2	2		1	7
	변경	**24**	**11**	2	2		**2**	7
6급	당초	102	60	2	9		7	24
	변경	**106**	**65**	2	9		**6**	24
7급	당초	148	79	5	24		10	30
	변경	**151**	**85**	5	24	**0**	**7**	30
8급	당초	126	61	5	25	1	9	25
	변경	**132**	**64**	5	**27**	**2**	**9**	**25**
9급	당초	58	33		4		4	17
	변경	**64**	**39**		**4**		**4**	**17**

3. 금후계획

가 . 입법예고 : 2018. 8. 9 ~ 8. 28(20일 간)까지 실시 예정

나. 전라북도 규칙안 검토, 공포 · 시행 : 2018. 9월 중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291, FAX : 063-350-24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명선 (전화 : 063-350-229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규칙 제 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 급 \ 기 관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 건 의료원	농업 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515	270	14	67	32	29	103
정무직계		1	1					
정무	군 수	1	1					
별정직계		1	1					
6급	비 서	1	1					
일반직계		482	267	14	67	3	28	103
4급	소 계	2	1		1			
	행 정	1	1					
	의 무	1			1			
4·5급	소 계	2	2					
	행 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5급	소 계	24	11	2	2	0	2	7
	행 정	3	2	1				
	시 설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농·시·사	2						2
	행·농·사	1						1
	행·농·사·환	1						1
	행·농·시·보	1						1
	행·농·녹·시	1						1
	행·농·녹·간	1						1
	행·보·간·의	1			1			
	의무·보·간·의	1			1			
6급	소 계	106	65	2	9	0	6	24
	행 정	13	12	1				
	농업	1	1					
	녹 지	2	2					
	시 설	4	4					

	간 호	1			1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0	9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1	8	1				2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8	7				1	
	행정·시설·공업	0	0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	1	1					
	환경·시설	1					1	
	보건·환경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시설·녹지	1					1	
	행정·환경 ·공업	2					2	
	행정·세무·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농업·세무	5						5
	행정·농업·사회복지	4						4
	행정·농업·녹지	5						5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세무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전산·농업·녹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4			
	행정·사무운영	1	1					
	운전	2	2					
	행정·사무·전기·기계	2	1				1	
7급	소 계	151	85	5	24	0	7	30
	행 정	22	19	2				1
	세 무	3	3					

	사회복지	4	2					2
	공업	1	1					
	농 업	5	5					
	녹 지	3	3					
	보건	2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보건진료	3			3			
	환 경	1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6	3					3
	행정·사회복지	7	2					5
	행정·사서	2	2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6	5	1				10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6	4				2	
	행정·보건	2			2			
	전산·방송통신	3	3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5			5			
	환경·공업	1					1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환경	4	1					3
	행정·농업·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사무운영	7	2	2			1	2
	행정·운전·시설관리	1	1					
	열관리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0						
	운전	7	3		3			1
	열관리·전기운영	1					1	
8급	소 계	132	64	5	27	2	9	25
	행 정	19	15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3	3					
	공 업	2				2		
	농 업	4	4					
	녹 지	2	2					
	보 건	4			4			
	의료기술	5			5			
	간 호	5			5			
	보건진료	5			5			
	환 경	3	2				1	
	시 설	7	6				1	
	행정·세무	6	2					4
	행정·사회복지	9	3					6
	행정·전산	3	2					1
	행정·사서	0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7	5					2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5	1				2	2
	행정·시설	14	7					7
	행정·방재안전	2	2					
	전산·방송통신	2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행정·농업·보건	0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사무운영	0		0				
	전기운영	0						
	기계운영	3	2				1	
	운전	6	2	2	1		1	
	열관리·전기운영	1					1	
9급	소 계	64	39	0	4	0	4	17
	행 정	13	8	0				5
	세 무	2	2					
	사회복지	4	4					
	녹 지	1	1					
	보 건	4	1		3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지	10	3					7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6	3					3

	행정·환경	3	1				2	
	행정·시설	11	1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환경·녹지	1	1					
	보건·의기	1			1			
	운전	1	1					
	기계운영	1					1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농기계교관	1				1		
지도직계		26				26		
지도관	농촌지도	3				3		
지도사	농 촌지도	23				23		
연구직계		5	1			3	1	
연구사	기록	1	1					
	농업연구	3				3		
	학예연구	1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 \ 기관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493	248	14	65	31	32	103
정무직계		1	1					
정무	군 수	1	1					
별정직계		1	1					
6급	비 서	1	1					
일반직계		460	245	14	65	2	31	103
4급	소 계	2	1		1			
	행 정	1	1					
	의 무	1			1			
4·5급	소 계	2	2					
	행 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5급	소 계	21	9	2	2		1	7
	행 정	3	2	1				
	시 설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신설>							
	행정시설	3	2				1	
	행정·환경·시설	1	1					
	<신설>							
	행정·농업·수의	1	1					
	행·농·시·사	2						2
	행·농·사·지도	1						1
	행·농·사·환	1						1
	행·농·시·보	1						1
	행·농·녹·시	1						1

개 정 안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 \ 기관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515	270	14	67	32	29	103
정무직계		1	1					
정무	군 수	1	1					
별정직계		1	1					
6급	비 서	1	1					
일반직계		482	267	14	67	3	28	103
4급	소 계	2	1		1			
	행 정	1	1					
	의 무	1			1			
4·5급	소 계	2	2					
	행 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5급	소 계	24	11	2	2		2	7
	행 정	3	2	1				
	시 설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농·시·사	2						2
	행·농·사	1						1
	행·농·사·환	1						1
	행·농·시·보	1						1
	행·농·녹·시	1						1

	행·농·녹·간	1						1
	행·보·간·의	1			1			
	의무·보·간·의	1			1			
6급	소 계	102	60	2	9	0	7	24
	행 정	15	11	1			3	
	농업	1	1					
	녹 지	2	2					
	시 설	5	5					
	간 호	1			1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10	7	1				2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2	2					
	행정사설	6	5				1	
	<산설>							
	<산설>							
	농업수의	1	1					
	환경공업	1	—	—	—	—	1	
	환경보건	1					1	
	환경사설	1	1					
	보건환경	2	2					
	<산설>							
	사설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행정·농업·세무	5						5
	행정·농업·사회복지	4						4
	행정·농업·녹지	4						4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농·녹·간	1						1
	행·보·간·의	1			1			
	의무·보·간·의	1			1			
6급	소 계	106	65	2	9	0	6	24
	행 정	13	12	1				
	농업	1	1					
	녹 지	2	2					
	시 설	4	4					
	간 호	1			1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0	9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1	8	1				2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2	2					
	행정사설	8	7				1	
	행정사설공업	0	0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	1	1					
	<삭 제>							
	<삭 제>							
	환경사설	1	1					
	보건환경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사설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1
	행정·농업·세무	5						5
	행정·농업·사회복지	4						4
	행정·농업·녹지	5						5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세무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전산·농업·녹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4			
	행정·사무운영	1	1					
	운전	2	2					
	사무·전기·기계	2	1				1	
7급	소 계	148	79	5	24		10	30
	행 정	22	16	2			3	1
	세 무	3	3					
	사회복지	4	2					2
	공업	2	1				1	
	농 업	5	5					
	녹 지	3	3					
	보건	2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보건진료	3			3			
	환 경	1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6	3					3
	행정·사회복지	7	2					5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6	5	1				10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보건	2			2			
	전산·방송통신	2	2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5			5			
	환경공업	1					1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	3					1	2

	행정·보건·세무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전산·농업·녹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4			
	행정·사무운영	1	1					
	운전	2	2					
	사무·전기·기계	2	1				1	
7급	소 계	151	85	5	24		7	30
	행 정	22	19	2				1
	세 무	3	3					
	사회복지	4	2					2
	공업	1	1					
	농 업	5	5					
	녹 지	3	3					
	보건	2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보건진료	3			3			
	환 경	1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6	3					3
	행정·사회복지	7	2					5
	행정사서	2	2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6	5	1				10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6	4				2	
	행정보건	2			2			
	전산·방송통신	3	3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5			5			
	환경공업	1					1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	2						2

	녹지							
	행정·농업·환경	4	1					3
	행정·농업·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사무운영	7	2	2			1	2
	행정·운전·시설관리	1	1					
	열관리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전	7	3		3			1
	열관리전기운영	0					0	
8급	소 계	126	61	5	25	1	9	25
	행 정	20	16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3	3					
	공 업	1				1		
	농 업	4	4					
	녹 지	2	2					
	보 건	4			4			
	의료기술	5			5			
	간 호	5			5			
	보건진료	5			5			
	환 경	3	1				2	
	시 설	8	6				2	
	행정세무	5	1					4
	행정·사회복지	8	2					6
	행정전산	4	3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6	4					2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3	1					2
	행정시설	14	7					7
	행정·방재안전	2	2					
	전산·방송통신	1	0	1				
	보건간호	0			2			
	보건환경	1	1					

	녹지							
	행정·농업·환경	4	1					3
	행정·농업·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사무운영	7	2	2			1	2
	행정·운전·시설관리	1	1					
	열관리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0					0	
	운전	7	3		3			1
	열관리전기운영	1					1	
8급	소 계	132	64	5	27	2	9	25
	행 정	19	15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3	3					
	공 업	2				2		
	농 업	4	4					
	녹 지	2	2					
	보 건	4			4			
	의료기술	5			5			
	간 호	5			5			
	보건진료	5			5			
	환 경	3	1				2	
	시 설	7	6				1	
	행정세무	6	2					4
	행정·사회복지	9	3					6
	행정전산	3	2					1
	행정사서	0					0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7	5					2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5	1				2	2
	행정시설	14	7					7
	행정·방재안전	2	2					
	전산·방송통신	2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행정·농업·보건	0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사무운영	0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0	
	운전	6	2	2	1		1	
	열관리전기운영	1					1	
9급	소 계	58	33		4		4	17
	행 정	11	4				2	5
	세 무	2	2					
	사회복지	4	4					
	녹 지	1	1					
	보 건	4	1		3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지	10	3					7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6	3					3
	행정환경	1	1				0	
	행정시설	10	10					
	<신설>							
	행정·환경·녹지	1	1					
	보건의기	1			1			
	운전	1	1					
	기계운영	1					1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농기계교관	1				1		
지도직계		26				26		
지도관	농촌지도	3				3		
지도사	농촌지도	23				23		
연구직계		5	1			3	1	
연구사	기록연구	1	1					
	농업연구	3				3		
	학예연구	1					1	

	행정·농업·보건	0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사무운영	0						
	전기운영	0					0	
	기계운영	3	2				1	
	운전	6	2	2	1		1	
	열관리전기운영	1					1	
9급	소 계	64	39		4		4	17
	행 정	13	8				0	5
	세 무	2	2					
	사회복지	4	4					
	녹 지	1	1					
	보 건	4	1		3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지	10	3					7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6	3					3
	행정환경	3	1				2	
	행정시설	11	1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환경·녹지	1	1					
	보건의기	1			1			
	운전	1	1					
	기계운영	1					1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농기계교관	1				1		
지도직계		26				26		
지도관	농촌지도	3				3		
지도사	농촌지도	23				23		
연구직계		5	1			3	1	
연구사	기록연구	1	1					
	농업연구	3				3		
	학예연구	1					1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

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18 - 73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것을 요청 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개방화장실의 지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7조(개방화장실)의 일부 규정을 신설

- (현행) 조례 제7조제2항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3. 금후계획

○ 입법예고 : 2018. 8월중

○ 일부개정 조례(안)사전 심사 : 2018. 8월중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18. 8월중

○ 성별영향평가 검토 : 2018. 8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9월중

○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 상정 : 2018. 9월중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환경위생과장)

2) 팩 스 : 063-350-2339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전화 063-350-2518)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방화장실) ① (생 략)	제7조(개방화장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 5.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6.>

[제목개정 2017. 5. 8.

장수군 공고 제 2018 - 744호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개정이유**

◎ 읍 · 면 당직 보완대책 강구로 재택근무자의 대기근무 및 조기출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읍 · 면 재택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대기근무, 다음날 1시간 조기출근 규정 삭제(안 제6조제5항제3호)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군보게재 익일부터 20일간
나. 예산수반여부 : 부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행정지원과)
2) 팩 스 : 063-350-2420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행정지원과 담당자(전화 : 063-350-2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④ (생 략) ⑤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후 1시간 대기근무, 다음날 1시간 조기출근 단,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조기출근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2.07.15 규칙0863, 2004.12.28 규칙0894, 2006.04.25 규칙0910〉〈신설 2000.05.01. 규칙0824〉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장수군 고시 제 2018 - 72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장 수 군 수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폐지) 사유
섬진강	능곡천	산서면 동화리 산36-2임 외100필지	27,332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수립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능곡천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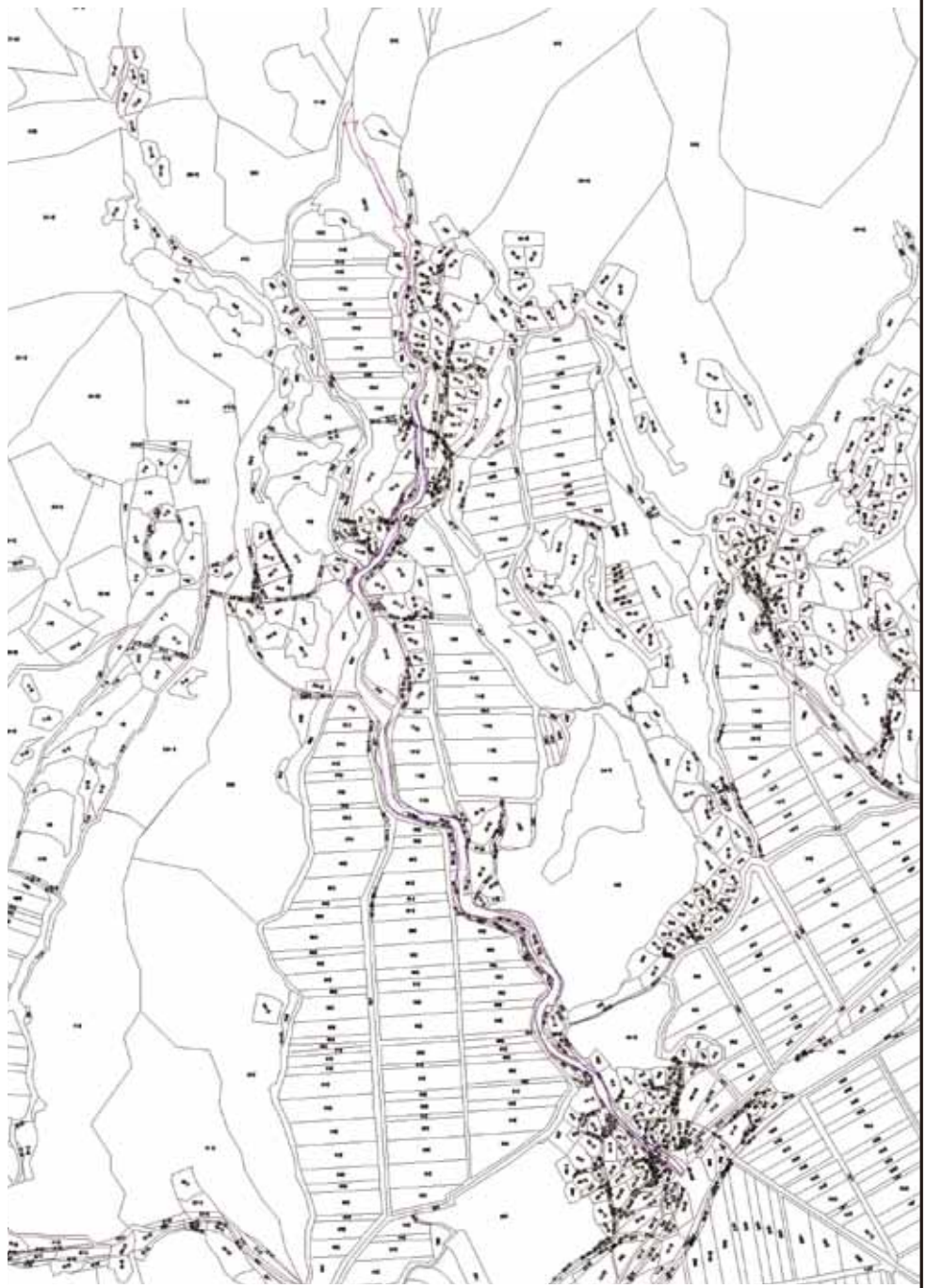

※ 파란색: 소하천구역(기정), 자주색: 소하천구역(변경)

■ 세목조서 (1/4)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소하천구역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구	동·리	지번				주소	성명
총계							27,332		
	소계						71.171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6-2	대	3	0.019	동화리	임덕원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09-4	천	26	0.052	오산리	권승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6-3	도	43	0.132	동화리	임덕원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6-1	대	387	0.143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 107, 101동 504호 (센트럴카운티)	최근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65-2	도	13	0.388	동화리	박재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05-2	도	119	0.407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6-41	이근용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57-2	도	155	0.485	오산리 185	권정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202	도	2,281	0.682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50-1	답	1,220	0.863	산서면동화리447	한공석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44-5	답	19	1		장수군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20-1	대	479	1	인천시 북구 부평동 61-17	김재두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248	구	2,139	1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56	도	50	2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65	전	7	2	동화리	박재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20-3	구	14	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35	임	489	3	752	양진기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2	천	36	3	746	양재일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58-4	답	14	3		국(건설교통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71-2	도	215	3	736	임종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64-3	천	3	3	436	임경남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59-2	도	96	5	동화리	이상옥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60-3	도	139	5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이선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39	대	202	8	716	양석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08-2	도	109	8	오산리	권승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41-4	답	48	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908	답	2,012	9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1	소철호

■ 세목조서 (2/4)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소하천구역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구	동·리	지번				주소	성명
	소계						609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4-9	도	130	9	756	양석신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09-1	천	10	10	오산리	권승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36-1	대	158	12	152-1	윤영술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78-1	잡	145	14	717	양재풍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04-2	도	69	14	452	이명식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40	답	89	14	716	양석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92	천	109	15		국(건설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909	답	1,019	15	673	소재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63-2	도	46	16	463	최수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3	전	83	17	동화리	임영완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4-3	대	707	17	716	양석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956	구	352	18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70	전	109	18		국(재무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9-2	도	33	19	717	양재풍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64-4	천	36	23	436	임경남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7-3	전	45	26	155-3	이영근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9-1	답	889	26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7	양도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7-2	도	20	20	447	이훈봉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8-2	도	96	32	동화리	권승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1-1	대	288	34	716	양석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8-1	전	132	37	461	최강석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43	천	100	39		국(건설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8-2	도	36	36		장수군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3-4	전	418	41	742	배길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53	도	354	43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51-5	임	145	44		국(건설교통부)

■ 세목조서 (3/4)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소하천구역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구	동·리	지번				주소	성명
	소계						2,117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08-1	답	344	50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능곡길 103-6	양도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88	답	284	50	461	최강석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9	전	129	51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28	임춘승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58	도	61	52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59	도	1,401	60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33	대	655	62	580-1	정동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09-2	도	99	62	오산리	권승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11-5	도	63	63	746	이용남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58-2	도	420	65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60-2	전	76	71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이선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4	잡	73	71		장수군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5-2	도	76	72	동화리	최창주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910	답	2,575	73	461	최강석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41-1	답	1,249	74	716	양석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02-12	임	572	75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능곡길 126	이상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176	답	1,761	79	717	양도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38	임	539	86	717	양도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41-5	답	1,030	89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6	양석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952	구	14,391	90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39	천	153	97		국(건설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38	천	358	102		국(건설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7-1	대	1,092	10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1-3	재단법인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5-1	대	112	110	461	최강석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40	천	177	126		국(건설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74-3	대	136	136	574-1	한천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54	도	1,012	149		국(국토해양부)

■ 세목조서 (4/4)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소하천구역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구	동·리	지번				주소	성명
	소계						24,533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55	도	387	174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79-1	묘	225	187	동화리	김경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3-2	도	198	196	동화리	임덕원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15	전	218	207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6-41	이근용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41	천	235	227		국(건설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34	임	840	248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717	양도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64-2	도	304	259	436	임경남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50-4	답	278	261		국(건설교통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61	도	1,028	271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3-1	대	313	306	162	김오곤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58	천	2,610	330		국(건설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954	도	7,720	359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42	천	371	363		국(건설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44-4	임	845	396		장수군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77	전	486	486	716	양석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57	도	1,396	621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산15	임	17,256	635	580	주두열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산36-2	임	6,720	723	776	양석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69	전	750	74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22-1(고사동)	권호길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67	유	1,663	1,589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산48	임	6,650	2,369	717	양도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75-1	유	3,323	3,268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136	천	15,986	10,317		국(건설부)

장수군 고시 제 2018 - 76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사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규정』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장 수 군 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

2. 사업내용 및 구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단위: 천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승인면적 (㎡)	사업 시행자	공사비 예정액	사업기간	비고
읍·면	리								
산서	쌍계	산72-2	임야	3,438	3,438	이현국	73,843	2018.08.10.~ 2019. 08. 09.	

3. 사업의 효과 :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4. 지형도면 : 실음생략

장수군공고 제 2018 - 724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8년 08월 03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장수읍 용계리 711	43m	4m	47㎡	백형배	동의

2018년 8월 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고 제 2018 - 739호

양삼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군 양삼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9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양삼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양삼마을 일원

다. 사업규모: 축제및호안정비 L=0.3km, 교량재가설 4개소, 낙차공 1개소

라. 사업시행자: 장수군수

2. 보상대상

가. 대상 : 토지 및 물건(붙임 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18. 8. 10. ~ 2018. 8. 24.(15일간)

나. 열람장소: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 063-350-2269)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열람기간 내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손실보상협의 통지일 ~ 사업완료시까지

가.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보상금 지급은 협의계약 체결 후 토지 등을 장수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수군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 063-350-2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양삼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② 사 업 장 위 치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일원			
③ 사 업 자	장수군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편 입 토 지 조 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시/군	동/읍/면	리	지번	지목	(㎡)		
1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26-7	답	2,421	70	
2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31	대	46	46	
3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30-3	답	2,315	180	
4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30-8	답	29	29	
5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30-1	답	1,725	314	
6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3	대	417	147	
7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1	대	563	30	
8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1	대	563	19	
9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1-1	대	35	35	
10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0	대	347	50	
11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9-2	대	159	57	
12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76-1	대	182	51	
13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9-1	답	1,134	81	
14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9-1	답	1,134	28	
총 계						11,070	1,137	

장수군 공고 제 2018 - 740호

양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ㅇ 명칭 : 양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장수군수

ㅇ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723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19,830㎡

ㅇ 사업규모 : 제방축제 L=0.3km

교량재가설 4개소, 낙차공 2개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18년 8월

ㅇ 준공예정일 : 2019년 9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도서)

ㅇ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ㅇ 열람장소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063-350-2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토 지 조 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시/군	동/읍/면	리	지번	지목	(㎡)		
1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26-7	답	2,421	70	
2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31	대	46	46	
3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30-3	답	2,315	180	
4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30-8	답	29	29	
5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30-1	답	1,725	314	
6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3	대	417	147	
7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1	대	563	30	
8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1	대	563	19	
9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1-1	대	35	35	
10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0	대	347	50	
11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9-2	대	159	57	
12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76-1	대	182	51	
13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9-1	답	1,134	81	
14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99-1	답	1,134	28	
총 계						11,070	1,137	

군보발행안내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